

# 가스사고예방지원금 운영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Operation Method of Gas Accident Prevention Support Fund-

송수정 \*  
강경식\*\*

### Abstract

현재 가스관련 3법상의 가스사고예방지원금은 그 적립방식이나 규모가 현실에 맞지 않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충실한 운영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스사고예방지원금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지원금의 적립방법, 지원금의 규모 및 활용방법의 검토를 통하여 가스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1. 서론

대부분의 국가들은 처음에는 석탄, 석유 중시의 에너지를 사용하였으나 최근 들어 에너지의 유한성 및 심각한 공해문제 등으로 인해 에너지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대체에너지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체에너지로서 여러 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중 한 종류가 가스인데, 가스는 액화기술의 발전으로 부피가 적고 운반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연소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적기 때문에 총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가스가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964년 대한석유공사 울산공장의 가동을 통해 가스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게 되면서 엘피가스가 본격적으로 가정연료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스의 편리성, 저공해성, 열효율성 등으로 인해 가스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가스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가스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

\* 신성대학 품질관리과

\*\* 명지대학교 산업공학과

1994년에 발생한 아현동 가스폭발사고와 뒤이어 발생한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에서 보듯이 가스사고는 엄청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21세기의 주요에너지원의 역할을 담당할 가스에너지에 대한 위험관리는 국가행정의 운영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중의 하나이며,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하여 미래에 대한 투자와 인식이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가스사고예방지원금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지원금의 적립방법, 지원금의 규모 및 활용방법의 검토를 통하여 가스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2. 가스사고예방지원금의 적립 및 활용 근거

현재 가스사고예방지원금의 적립 및 활용근거는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보험가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보험가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3조(보험가입)에 규정되어 있다. 각 법규 ①항에는 「도시가스(고압가스, 액화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그가 공급 또는 사용하는 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항에서는 「보험의 종류, 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③항에 의하면 「매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가스(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사업의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3조 ③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8조 ④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시행령 제22조 ④항에 의하면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사고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가스사고예방지원금 활용의 부적정성

가스관련 3법에는 수익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가스사고예방지원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과거 3회에 걸쳐 지원된 가스사고예방지원금의 실적을 보면 다음[표 3-1]과 같다.

[표 3-1] 가스사고예방지원금의 실적

연도별	수익금	지원금
91	3억 4천만원	6천 8백만원
92	4억 5천만원	7천만원
96	3억 3천만원	6천 6백만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수익금의 일부로 지원된 가스사고예방지원금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11개 원수보험회사 공동으로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신문광고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인 가스사고예방을 위해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4. 가스사고예방지원금 운영방법의 개선

##### 4.1 개선 필요성

가스사고로 말미암아 입는 경제적·정신적 손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엄청나다. 또한 가스사고가 발생할 후 그 손해에 대한 구제책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극소화시키는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 현행 가스관련 3법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보험사업자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가스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의 규정으로서는 가스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제대로 그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수익이 있는 경우 그 일부를 3년마다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적립방법이 부적당하고, 재원이 영세하므로 적절한 활용이 부적당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가스예방활동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가스사고의 사전예방활동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규모의 적정성은 물론, 적립방법의 적정성면을 중시하면서 가스관련 3법에 「강제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 4.2 개선방향

가스사고예방지원금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지원금 적립방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가스사고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금규모가 적정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현행의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충분한 규모가 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원금활용이 가스사고예방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 (1) 지원금적립방법의 적정화

현행 가스관련 3법에서 임의규정으로 정한 가스사고예방지원금 적립방법으로는 가

스사고예방지원을 수행하는 자가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데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왜냐하면 수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적립할 수 없으므로 예측 가능한 예방사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행 가스사고예방지원금의 적립산출 방식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분담금의 산출과정상 출재율과 재보험금회수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또한 사업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같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스사고예방지원을 위한 분담금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각 보험사업자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원수보험료의 일정액(예컨대, 원수보험료의 3%)을 「사전징수(원천징수)」하는 강제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스관련 의무보험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자에 대한 행정관청의 과태료 부과액 중 일정부분(예컨대, 과태료징수금의 50%)을 가스사고예방지원금으로 적립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등에서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도로교통시설에 투자되는 것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셋째, 현행 가스관련 3법상 임의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 매 3년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3년째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규정을, 매 1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에 의한 사후보상보다도, 가스사고예방지원금에 의한 활발한 가스사고예방사업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법규정으로는, 보험사업자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운용으로 수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징수 할 수 없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고예방사업이 불가능해 진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위에서 제시한 3가지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2) 지원금규모의 적정화

[표 3-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지원분담금은 91년에 6천 8백만원, 92년 7천 만원, 96년에 6천6백만원에 불과하므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고예방사업을 위해서는 지원적립금규모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스사고예방사업자는 가스사고예방사업에 필요한 지원금규모를 그 사업의 규모에 맞추어 편성함으로써, 가스사고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지원금활용의 적정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자가 납부한 과태료의 일정부분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원수보험료의 일정액을 가스사고예방지원금으로 적립할 경우, 가스사고예방사업주체는 지원금을 다음과 같은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 보험가입자에게 가스누출감지기 설치
- 보험가입자의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적 점검
- 가스로 인한 공공목적사고 예방 및 홍보
- 배상자력이 없는 무보험자로부터 입은 피해자에 대한 범정보상한도액에서의 구제

- 보험가입홍보비
- 보험가입자 검색 전산 구축비 및 전산 운영비
- 보험사업자의 요구에 의한 불량물건에 대한 사전적 안전점검
- 보험계약 갱신시 안전점검 실시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특수건물 정기 검사시 지원

## 5. 결론 및 제언

현재 가스관련 3법상의 가스사고예방지원금은 그 적립방식이나 규모가 현실에 맞지 않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충실한 운영과 미래의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관련 3법에는 매 3년마다 보험회사 수익금의 일부를 가스사고예방지원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가스사고예방활동은 3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므로 정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가스배상책임보험의 연간 보험료가 얼마 되지 않아 예방활동을 할만큼의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정기적인 지원을 통해 가스사고를 줄이는 것이 사고예방의 목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스사고예방지원금의 운영방법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지원금의 적립방법의 적정화이다. 둘째 지원금 규모의 적정화이다. 셋째 지원금 활용의 적정화를 들 수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자동차손해배상보험과 같이 정부보장사업을 두고 가스사고예방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 참고문헌

1. 국무총리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안전관리실태 평가와 정책개선방향, 1995
2. \_\_\_\_\_,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999
3. \_\_\_\_\_,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1999
4. 대한손해보험협회, 조사연구자료, 1996
5. \_\_\_\_\_, 도시가스사업법, 1999
6. \_\_\_\_\_,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1999
7. \_\_\_\_\_,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1999
8. \_\_\_\_\_,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1999
9.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서울대학교 자동차시스템 공동연구소, 1994